

기획논문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형개념 적용의 문제점

이원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연문화재의 원형개념을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의 개념에 적용하여 그 사례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완전성의 측면에서 원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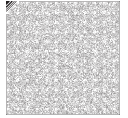
첫째, 원형개념 적용의 틀은 처음 발생한 시점을 중요시 여기는 시원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형개념의 중요성을 따른 통시성, 원형이 발생한 이후 특정시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원형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인 시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천연기념물과 명승정책은 일제강점기에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진 이후 현재 564건의 천연기념물과 109건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다.

셋째, 국내 자연유산의 최초 정책인 자연보호운동의 효시 또한 문화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환경부의 자연관련정책 일원화로 현재 문화유산 위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자연관련 정책 양립현상은 자연유산에 관한 용어와 정책주체에 관한 혼돈을 야기하였다.

넷째, 자연문화재의 원형개념 적용상의 문제점은 자연문화재가 문화재청에서 주로 다루는 문화유산과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일반적인 자연환경과는 다른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로 진화하면서 원형에 대한 시원성과 통시성, 시대성 등을 다의적으로 포함하게 된 것에서 기인함에 따라 자연유형별 접근보다는 융합적이며 전문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상회복의 쟁점들은 완전성의 개념에 대입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대상과 그 장소의 특징”을 복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되 원상회복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원형개념의 논리적 모순과 원형회복과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I. 서론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문화선진국으로서 중국대륙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반도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에 우리문화를 전파하는 등 반만년 역사를 통해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 왔다. 특히 산지가 발달한 아름다운 우리의 금수강산을 배경으로 전국에 산재한 소중한 문화재들은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에 삼국 중 가장 먼저 외세를 수용한 일본의 제도를 적극 받아들이고 6.25전란 후에는 국토개발의 논리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재보호규범을 확립하는 등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화와 함께 문화재보존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던 서구에서는 1900년대 초에 보존대상의 존치와 복원을 통한 원상회복 개념이 활발하게 주장되었으나 그 대상의 본질적 가치인 원형에 관한 논의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진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 당연히 논외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보존기법이나 개념이 상당부분 진화된 상황에 와서는 문화재의 가치판단에 있어 원형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 부합 여부가 끊임없는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형과 복원에 관한 실체와 논리의 모순은 복원사업이라는 하나의 사회현상에서 보면 어느 쪽의 주장도 사변으로 취급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진리라고 신뢰하고 추종했던 대상의 실체에 대한 붕괴는 원래부터 상당한 모순의 집합체였던 것을 일깨워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면서 전통이라고 믿는 실체는 대부분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와서 재현된 물리적 결과라는 단순한 사실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통해 얻어지는 미완의 결과는 그동안 무시되었던 원형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제도권 내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여지를 만들어 낼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자연문화재로 통용되는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원형개념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고의 화두는 그동안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범주에서의 자연문화

재의 제위치 정립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포착되었던 사안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다 보니, 서로 상충되는 요지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원형의 개념은 자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로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례로 해석하였다.

II. 본론

1. 원형개념 적용의 틀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인 안계복·이원호(2014)의 조선시대 궁궐정원의 원형경관 복원을 위한 제안에서 밝힌 내용을 위주로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원형에 관한 자연문화재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전에 원형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부터 다루어야 할 것이다. 1997년 12월 8일에 선포된 한국의 문화유산헌장에는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라는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다.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한다면 ‘맨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형(原形 original form)’ 혹은 ‘시원적(始原的) 형태’ 혹은 ‘시원성(始原性)을 가진 원형경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약 문화유산헌장에 나오는 ‘원래의 모습’이 ‘시원적(始原的) 형태’만을 의미한다면 큰 일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경복궁 복원사업은 경복궁이 처음 만들어진 1395년의 ‘시원적(始原的)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493년이 지난 1888년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문화유산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모습’이라는 말 속엔 어떤 개념이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늘 복원의 문제를 생각해 왔으며, 또한 복원할 때면 으레 따라오는 원형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원형’에 대한 논리적인 개념분석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역사경관 속에서의 원형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원형을 어떻게 복원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 원형판단을 위한 증거 추출은 서론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사회적 정의, 어원, 그리고 선행 연구결과로부터 개념을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어원을 추적해 보면 원형은 영어로 'prototype'라고 쓰는데, 그리스어로는 'πρωτότυπος(프로토티포스)'가 어원에 해당한다. 'πρωτότυπος(프로토티포스)'는 "첫 번째"라는 뜻의 'πρῶτος(프로토스)'와 "모델, 형상, 인상, 이미지, 패턴"이라는 뜻의 'τύπος(튀포스)'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원형이란 "첫 번째 모델, 첫 번째 모양,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상, 첫 번째 이미지"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첫 번째 모델, 첫 번째 모양"이라는 뜻은 원형의 시원성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상"이라는 뜻은 가장 대표하하는 이미지라는 뜻으로 시대성을 의미한다. Paul R Huey는 '복원은 어떤 기준 연도를 정해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역사는 시간적으로 하나의 정적인 시점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의 동적인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원형이 가지고 있는 통시성(通時性)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영국의 건축비평가 John Ruskin은 '복원은 마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 건축물은 그대로 두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원형이 가진 변형성(변형의 위험성)만을 강조하여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관이란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을 의미한다. 이차적으로는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시간, 이미지, 경험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함축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경관 가운데 역사경관이란 특히 과거 특정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유지관리 되어온 경관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만(1993)의 주장과 같이 역사경관은 통시적인 관점이 강하다. 그러나 역사경관 가운데 원형경관은 통시성(通時性)보다는 사적(史蹟)이 처음 조성되었을 때의 '첫 번째 모양', 즉 원형성(original form)이나 시원성(始原性)이 더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경관은 역사경관과 원형경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경관은 주로 전통적인지 아닌지, 즉 밖에서 유입된 외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 변형성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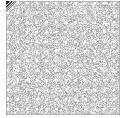
원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처음 발생한 시점을 중요시 여겨 이것을 원형(original form)으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인류의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영속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상적이며 본질적인 원형도 존재한다는 개념이다(강영은 외 2009: 36). 세 번째는 원형의 변화단계를 인정한 개념이다. 첫 번째 유형은 원형의 시원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린 정의며, 두 번째 유형은 통시성을 중요시한 정의다. 세 번째 유형은 원형이 발생한 이후 특정시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원형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시원성 보다는 시대성을 중요시 하여 내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관점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원형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증거(準據)로서 활용되는 대립되는 개념이 통시성(通時性)과 공시성(共時性), 시원성(始原性)과 시대성(時代性), 불변성(不變性)과 변형성(變形性)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형의 세 가지 유형과 원형 판단에 있어서의 3가지 대립되는 개념들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맥락으로 역사경관의 복원과 정비를 위한 논리적 근거¹로서 준

1 아래의 용어들은 역사보존의 어휘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 공통적인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는 어휘들이다. 이 정의는 미국 내무부가 정의한 내용으로 원형개념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개념들이다.

- 보존(preservation):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현재의 형태를 온전히 그 형태 및 재료, 그리고 장소 내 자연환경까지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필요에 따라 역사적인 건물의 재료의 지속적인 관리(유지)도 포함된다.
- 복원(restoration): 어떤 특정 시대에 존재하였던 건물 등을 그 형태와 고유적인 세부 항목 및 환경 그대로, 후대의 작업을 제거하거나 손실된 초기의 작업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만드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 재건축(reconstruction): 어떤 특정 시대에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사라진 건물, 구조 혹은 물체를 존재하였던 그대로의 정확한 형태 및 세부 항목을 전혀 새로운 건축과정에 의해서 재현하는 과정 혹은 작업이라 정의한다.



용되어야만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안계복·이원호 2014, 필자 재인용).

표 1. 원형의 논리적 기준

통시성(通時性)	공시성(共時性)	역사경관
시원성(始原性)	시대성(時代性)	원형경관
불변성(不變性)	변형성(變形性)	전통경관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문화재에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각기 특징에 따라 복잡하게 작용된다. 자연유산은 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상대적 개념이다. 문화유산이 인류의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룩된 유·무형의 유산이라고 정의한다면 자연유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형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원형이라는 개념의 적용에서 이 두 가지 범주를 명확히 구분지을 수는 없다. 자연유산이 자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유형의 유산이기는 하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자연유산 내에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원형의 개념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본 고에서는 원형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사례를 통해 그 유형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특징별로 분류하는 시도를 위한 논의로 볼 수 있다.

2. 국내 천연기념물과 명승 정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자연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는 1933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를 포함한 「조

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가 제정되어 1945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혼란이 계속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정상적인 문화재 관리정책을 시행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일제강점기에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여 관리하는 정도에 머물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한 종류로 자연유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속한 것으로는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광물·동굴·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2월 현재 천연기념물은 총 564건에 이르며 지정유형별로는 동물 101건, 식물 261건, 지질·광물 82건, 천연보호구역 11건, 명승은 109건에 이르고 있다.

3. 자연문화재 정책의 부진과 분류상 혼돈

현재 국가유산 정책은 의례적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자연유산이 취급되고 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이 관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의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가 저평가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효시는 문화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자연문화재’라는 단어가 논리상 자연이 어떻게 문화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정교합으로 인식되는 지금과는 달리 초기에는 일본과 같이 천연기념물²과 명승은 역시 문화재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

2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는 용어는 옛 독일 프로이센의 자연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 남작이 「신대륙의 열대지방 기행」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천연기념물이란 용어가 자연유산의 보호개념으로 정립하게 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이 향토애와 연계되어, 18세기 초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메이지 시대 후반에 토지개발, 도로건설, 철도부설, 공장건설 등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일본 고유의 자연과 풍경, 유적 등이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1907년(메이지 40년)에 식물학자인 도쿄제국대학 미요시 마나부(三好學)교수가 명목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천연기념물 보존의 필요성 및 보존정책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1911년에는 제국회유족원에서 ‘사적 및 천연기념물보존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며, 1919년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이 제정되었다. 2차대전 이후 그때까지 개별 제도에 의해 보존되어 온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문화재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포함시킨 「문화재보호법」이 1950년 제정되면서 체계화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천연기념물 제도가 우리나라, 북한, 대만 등에 영향을 미쳤다.

나 문화재청은 초기 정책 추진기에 자연유산에까지 매진하기에는 조직규모 측면에서 여력이 없었고 환경부의 자연환경 정책 일원화 과정 또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을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누를 범하면서 문화재청이 지금과 같은 문화유산위주의 정책에 치우쳐버린데에 일조하였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부연하자면 1963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된 자연보존협회도 문화공보부에 소속된 법인으로 출발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의 초기 천연기념물 제도가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효시이며 상당부분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제도적 장치로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른 종류의 문화재들은 지정문화재로 분류하는데 이의가 없으면서도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광의의 문화재 범주로 취급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 용어의 개념사이에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혼돈된 논리가 전개되기도 하였다(이위수 2010).

그러나 이 진부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자연문화재 정책의 당위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2006년 국무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관리는 그 성격상 문화재청이 관장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 많은 환경단체들조차도 문화재로서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이위수 2010)는 명백한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물학적,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로서 과학상·보존상·미관상 가치를 갖는 자연현상이며, 인류의 공동체로서 희귀성과 역사성·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고 세계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김윤식 2003).

4. 자연문화재에 대한 원형개념 적용의 문제점

원형판단에 관한 개념은 완전성과 관련된다. 그러면 완전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손상되고 유지되며 혹은 재현되는가? 불행하게도 과거 내셔널트러스트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어떤 쪽도 역사보존가들의 관점에서 그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성은 사적이나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련 기준에서 지키

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자연문화재에서는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완전성을 정의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역사보존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사전에서는 완전성을 정의하기를, '어떠한 것의 전체적이며,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실체 혹은 질, 완전한 상태, 또는 건전성'이라 하였다. 자연문화재에서 이러한 완전성을 판단하기에는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연문화재로 불리고 있는 자연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조상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명승이나 천연기념물과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유창민 외 2004).

이것은 자연유산의 개념이 당초 '현재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보호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각 국가의 전과과정을 통하여 여러 특징이 부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원형의 개념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된다. 이는 특이성, 희귀성, 향토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유산은 단순한 자연물에서 인간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개념으로 진화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에 대한 현재의 인식은 천연기념물과 같이 문화적 역사적 의미보다는 자연보호나 생태계 보존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의 천연기념물은 우리 민족과 정서적으로 오랜 유대를 가진 결과물로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원형의 판단기준을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과 생물종의 유전적 형질에 두는 것은 원형의 개념구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는 명승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원형 개념의 이해는 각각의 지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목들이 이러한 함의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동물, 식물, 지질 등 각 대상의 단순한 유형적 분류에 의해 원형개념을 판단하기에는 개념상 불합리성이 나타난다. 이는 다음 표에 제시하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제도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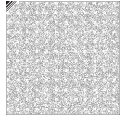


표 2. 천연기념물과 야생동식물 보호제도의 차이점(이위수 2010)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식물
법 목적	국가유산의 보존	생물 멸종예방 및 환경보호
대상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식물 노거수 - 한국 특유의 저명식물 - 전통 재배식물 - 수림지(문화수림, 학술림)	개체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식물
성격	-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사자료로서의 가치 - 재배식물 포함 - 멸종위기 여부 관련없음	- 문화성·자연사 고려 없음 - 재배식물 제외 - 멸종위기 해소 시 해제

사실 문화재청과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상의 물리적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목적과 그 가치를 두고 있는 대상은 명확히 다르다. 결론은 천연기념물은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정대상은 문화성과 자연사의 고려가 없으며, 문화재청은 멸종위기 여부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차이점은 원형의 개념을 적용하는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 요인이다. 이러한 가치기준의 차이점 때문에 자연유산은 해양,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의미하는 '자연환경'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은 그 문화를 태동시킨 재료의 하나로 그 문화의 원생적 모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의 발생은 천연기념물 지정 초기부터 포함되었던 사항은 아니다.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이 발견된다. 원래 한반도의 천연기념물 제도는 1919년에 제정된 일본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33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제정되었으며, 그 요목(要目)들은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을 담고 있다. 보존령에서는 천연기념물을 크게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구분했는데, 구분 및 내용은 일본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후 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요목(1935, 1937)』에는 1933년의 항목들이 일부 삭제되거

나 추가되면서 변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수정사항은 없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이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관련 주요항목들에서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각의 기준을 현행기준과 비교해보면, 동물분야의 지정기준은 대표성, 희귀성 등을 중점으로 한 일제강점기 때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오늘날에는 문화·민속·과학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규정을 고려하여 지정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은 원형개념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음으로 식물분야의 기준은 각각의 식물이나 생태, 서식지 등 자연과학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일제강점기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발전해왔다. 지질·광물의 지정기준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세부 기준 항목이 전반적으로 다양해졌으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는 인문·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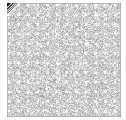
한편 각각의 천연기념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 면적의 보호구역이 함께 지정된다. 이에 따르면 식물 분야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이며,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 등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개체의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입지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적 증거가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원형의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은 크게 동물, 식물, 지질·광물·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의 자생지와 같이 그 형질이 생성된 이후부터 고유의 유전자 기능이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원형에 가깝고 시간을 초월하는 광의적인 개념의 통시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축양동물 및 명목과 같이 문명진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인류간섭을 통해 그 고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특유의 시원성과 함께 협의의 통시성을 함께 지닌다 하겠다.

표 3.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현행법(2015.10.6.개정)에 원형개념의 적용

지정종목	지정기준	원형개념의 적용
동물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다.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식물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시원성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광의적 통시성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
천연기념물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와 그 분포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2) 지질시대의 퇴적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조(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3) 침식 및 퇴적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변(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시원성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1) 얼음골, 풍혈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2) 샘: 온천, 냉천, 광천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지정종목		지정기준	원형개념의 적용
천연 보호 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시대성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자연 현상	관상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현저한 것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명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시원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시원성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시원성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시원성
	나.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시원성,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곳,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시대성, 통시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협의적 통시성, 시대성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시원성, 광의적 통시성
	* 광의적 통시성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가 측정의 의미가 없을 만큼 광범위한 것 ** 협의적 통시성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가 문명진화과정에서 포함된 것		

지질·광물·지형은 무기물을 기본 형질로 하고 지각형성에 관여된 형질들로 지구의 생성과 그 시간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간이 인간의 문화와 관련된 시간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여 광의적 통시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질·광물·지형에서 보여지는 광의적 통시성에는 어떤 특정한 시기의 성질이 나타나는 공시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천연기념물의 동물·식물분야는 유한한 생명체로서의 가치와 인간 삶과 함께 인정받은 유산적 측면의 가치를 고려하게 되므로 광의적 통시성을 갖기도 하고 특정시기에 그 가치평가에 주요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 설화, 문헌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시대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명승의 경우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행위의 결과물이 널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므로 시원성과

통시성, 시대성을 함께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대상들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 기준이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의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Ⅲ. 결론 :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상 회복의 쟁점들

본 고에서는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형, 통시성, 시대성을 적용한 원형개념과 그 문제점들을 그 대상들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우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상회복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문화유산이라 통칭되는 유형의 문화재들이 원형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고쳐

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연문화재는 그동안 무엇을 원형으로 규정하고 보존해왔는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식물을 보존하고 동물의 종, 각종 지질, 광물자원, 고문헌에 묘사된 옛 경관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도 그 실체는 광범위하고도 모호하다. 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모색방안의 하나로 원형개념 적용의 세가지 요소들을 완전성의 개념과 대입해 원상회복을 논의하는데 고려해야 할 기초개념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보존학자 모튼은 완전성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대상과 그 장소의 특징”이라고 정의하였다. 모튼은 의미와 가치라는 단어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완전성이 막연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적인 복원은 그것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떠한 대상이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전부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형태, 솜씨, 배치 혹은 장소, 재료, 대상의 양 혹은 기능, 그리고 연속성 등 여섯 개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자연문화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이에 맞는 속성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다의적인 원형개념의 적용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해당 분야의 각개 전문가가 함께 통섭하는 전문적 협의체 구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각 분야의 유형만을 고려한 단일분야 전문가의 조언은 진정한 의미의 원형해석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를 보다 발전시키면 자연문화재분야에서도 원상복원의 ‘기준’과 ‘지침’ 제시는 적어도 원상복원과 보존적 입장의 활용의 성공 혹은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침들이 인지되고 학습되고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자연문화재 분야에 원형에 관한 의문들이 점차 해소되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목표는 자연문화재의 활용을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규정하고 성공적인 원상회복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완전하지만 자연문화재가 지닌 원상을 보존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활용과정에서 본래의 본질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은 · 최동욱 · 홍성희 · 정윤희 · 김상범 · 임승빈, 2009, 「원형경관의 개념 정립 및 형성요인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5(4)
- 김윤식, 2003,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국제학술회의 및 제4회 자연문화재 담당자 교육」, 문화재청
- 안계복 · 이원호, 2014, 「조선시대 궁궐정원의 원형경관 복원을 위한 제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 안동만, 1993, 「역사도시에서의 역사경관 보전방안」 『도시문제』 301」
- 유창민 · 박동석 · 권오복 · 이재근, 2004, 「조경적 측면에서의 천연기념물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 이선, 2009, 『한국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 수류산방
- 이위수, 2010, 「식물문화재의 보존관리교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Murtagh, William J., 2005, 'Keeping Time : The History and Theory of Preservation in America', John Wiley & Sons, 이원호 외 공역, 『역사경관보존론』(미출판)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o Natural Heritage

Lee Won H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Division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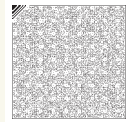
This essay explores the problems with applying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o natural heritage when it is based on originality and diachronic, historical period. It also suggests an alternative perception that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can be considered based upon “integrity”.

Firs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applying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falls into three types: one that centers on the time point at which heritage originated; another that respects the diachronic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and the last that bases original form on a particular time after the heritage originated.

Second, the national policy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monuments and scenic sites stayed at the level of consulting the Decree on the Preservation of Treasures, Historical Remains, Scenic Sites, and Natural Monuments of Jose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after the leg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hrough enacting and proclaiming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62, 564 cases have been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Third, the natural conservation movement, the first national policy for natural heritage, was initiated from the heritage field, but the Environment Ministry subsumed all nature-related policies and ever since the heritage agenc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implemented only heritage policies regarding “cultural” heritage. The present state of the coexisting policies about the natural heritage by the Environment Ministry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sulted in leading the public confused about official terms and main policy agency of natural heritage.

Fourth, the difficulty of applying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o natural heritage stems from the fact that natural heritage is inherently distinct from cultural heritage, which i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heritag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heritage agency. In addition, natural heritage, similarly distinct from the overall natural



environment, has evolved in a way that incorporates human culture and thus diversely includes characteristics of originality, diachrony, and historical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an incorporative, professional approach is required rather than independent approaches for each type of natural heritage.

In conclusion, this essay suggests that issues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original conditions of natural heritage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integrity” concept by restor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or a place that imbue it with meaning and value,” with consideration given to efforts for alleviating logical contradictions within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hrough the preparation of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restoration of original condition.